

##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
제정 1971. 2. 20 조례 제 195호  
개정 1996. 3. 1 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  
2005. 10. 5 조례 제 667호  
일부개정 2017. 12. 11 조례 제174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법」 제5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7. 12. 11>

제2조(회계관계 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7. 12. 11>

1.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
2.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3조(재정보증)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위의 포괄계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,000만원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)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

##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
경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자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7. 12. 11>

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② 보증보험 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67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4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